#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79

발의연월일: 2021. 1. 22.

발 의 자 : 김성주 · 송옥주 · 남인순

강선우・정춘숙・정필모

이규민 · 허종식 · 소병훈

한병도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들이 원내 감염 방지 및 감염병 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 특히 선별진료소 등의 설치를 위해 응급전용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례, 응급전용중환자실 등 의 일부를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음.

이는 한정된 의료자원 하에서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나,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 와 같은 상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, 이로 인해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령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 고 있음

이에 감염병 유행, 자연재해,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

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의 유지·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, 불필요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2제4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, 감염병 유행 등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,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연재해, 감염병 유행 등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에 관한 적용례) 이 법 시행 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 중인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은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31조의2(응급의료기관의 운	-영)	제31조의2(응급의료기관의 운영)
① ~ ③ (생 략)	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	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
		해, 감염병 유행 등 「재난 및
		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
		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
		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
		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, 인력
		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
		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
		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
		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